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청소년·학교·직장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7조)
- 나.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8조)
- 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4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11. 13. ~ 12. 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4.12.11)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마포구민”이라 한다)”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생활화 하고”를 “생활화하고”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마포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포구민”을 “구민”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마포구민”을 “구민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8.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제3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

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u> <u>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마포구민”이라 한다)의 자 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 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국민체 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마포구민----- ----- ----- 생활화하고- ---- ----- -----.</p>
<p>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 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 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마 포구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 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 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p>	<p>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 별시 마포구청장----- ----- ----- 서울특별시 마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 ----- -----.</p>
<p>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 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3조(경비의 지원) ① ----- 구민----- ----- ----- 범위에서 ----- 지급할- -----.</p>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 6. (생략)

<신설>

<신설>

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② -----
-----.

1. 구민의 -----

2.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8.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준용)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다.